

하자심사 사건 「분쟁조정 회부」 통지서

사건번호		접수일자
당사자	신청인	
	피신청인	
결정 주문		
조정회부 취지		
안내 사항	조정절차	
	조정기일	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 4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

청인